

「食品等의 規格 및 基準」 解說

權 右 昌

〈國立保健院 食品分析科長〉

<目 次>

1. 規格 및 基準의 意義
2. 規格 및 基準의 制定目的
3. 規格 및 基準의 制定歷史
4. 規格 및 基準의 構成
5. 內容解說(食品等의 規格 및 基準)
 - 제1. 通則
 - 제2. 檢體의 採取 및 取扱方法
 -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
 1. 硫素 2. 重金屬 3. 添加物 4. 抗生
物質 5. 異物 6. 타알色素를 含有하여서는
아니되는 食品 7. 乳・乳製品・食肉 및 食
肉製品의 成分 및 保存等에 관한 一般規格
및 基準 8. 自然食品等의 成分規格

- 제4. 食品別 規格 및 基準
- 제5. 器具・容器 包裝의 規格基準 및 原材料
의 規格
- 제6. 玩弄品의 規格 및 基準
- 제7. 一般試驗法
- 제8. 洗淨劑의 規格 및 基準
- 제9. 食品等의 成分配合基準
- 제9의1. 加工食品中特定成分原材料配合基準
- 제10. 食品保存의 方法에 관한 勸獎基準
- 제11. 冷麵肉水等의 微生物에 關한 勸獎規格
- 제12. 試藥・試液・標準溶液等
6.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
7. 規格 및 基準의 活用
8. 自家規格 및 基準
9. 國際規格 및 他 規格基準
10. 規格基準과 問題點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

이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은 모든 食品에 適用하는 共通 規格基準과 乳・乳製品・食肉・食肉製品 등과 같은 一部 食品에 適用하는 規格基準을 規定한 것이다. 모든 食品에 適用하는 共通 規格基準은 許可與否에 關

係없이 모두에 適用된다. 원래는 각 個別食品別로 規制되어 있었는데 그 規格基準 內容이 서로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이를 統合하여 共通의 으로 適用하도록 한 것이다.

規制內容은 대개 有害物質에 대한 限度 등衛生的인 事項들로서 硫素, 重金屬, 異物, 타알色素 含有禁止食品, 乳・乳製品 등 8個項目이 收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은 그 運用上 다음과 같은 留念할 事項이 있으니 이를 잘 알아

두어 施行에 活用토록 해야 한다.

즉, 食品의 規格 및 基準은 모든 食品에 共通의으로 適用되는 이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과 각 個別食品 129品目(86년 8월 現在는 125品目이나 86. 7. 28 「Food等의 規格 및 基準」이 改正되어(保健社會部告示 제86-9號) 牛脂, 豚脂, 精製加工油脂 및 果糖이 追加되므로써 129品目이 되는 것임. 이는 86. 9. 1부터 施行됨)別로 規格基準이 規定되어 있는 제4. 食品別 規格 및 基準이 있는데 一般的으로 食品의 規格適否試驗을 할 때에 제4. 食品別 規格 및 基準에 列舉되어 있는 食品(129品目)에 대하여는 그 食品別 規格에 따라 試驗하되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中에서 必要한 項目을 選定하여 試驗하고 제4. 食品別 規格 및 基準에 列舉되어 있지 아니하는 食品에 대하여는 이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中에서 必要한 項目을 選定하여 試驗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食品을 檢定할 때에 試驗項目을 “規格適否”(規格適否試驗 또는 規格試驗이라고도 한다)라고만 하면 위의 제4.에 規定되어 있는 129種의 食品들은 그 각각의 個別規格에 따라서만 試驗하고, 이 제3.에 規定되어 있는 硒素나 重金屬등 共通規格은 除外되어 버린다.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이 제3.에 있는 項目을 選定하여 試驗한다고 되어 있으나 試驗을 依賴하는 사람이 選定하여 依賴하지 않으면 試驗機關에서 이를 獨自의으로 選定하여 檢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試驗을 依賴하는 사람이 個別規格 이외에 제3.에 있는 硒素나 重金屬, 異物 등 다른 項目을 追加로 試驗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項目을 明示해야 한다(例를 들면 規格適否 및 重金屬등).

어떤 項目을 追加로 選定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食品의 原料, 製造工程, 性狀 등을 참고로 하고, 檢查의 目的을 檢討하여 適切히 選定하여야 하며, 제3.에 있는 項目을 追加로 試驗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選定할

必要가 없다. 또한 129種의 個別品目 이외의 食品을 檢查할 때에는 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만 適用되므로 이 중에서 必要한 項目을 選定하여 試驗한다. 이하 構成順序에 따라 說明한다.

1. 硒 素

가. 硒素에 대한 規格

硒素에 대한 規格은 다음과 같다.

Food中の 硒素는 다음의 量을 超過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食品(水產食品 등)에 原來부터 含有된 硒素의 量은 除外한다.

Food의 種類: 硒素의 限度

[亞砒酸(As_2O_3)으로서 ppm]

固體食品	1.5
液體食品	0.3
調味料	1.5

固體食品: 外形이 固體인 食品과 直接 飲用하지 아니하는 시럽狀의 食品을 말한다.

液體食品: 外形이 液體로서 直接 飲用 할 수 있는 食品을 말한다.

調味料: 固體 또는 液狀의 食品으로서, 그 自體를 直接 섭취 또는 飲用하지 아니하고 食品을 製造, 加工 또는 調理할 때에 調味料 등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것을 말한다.

즉, 食品을 外形 및 섭취狀態(用途)에 따라 分類한 것이며, 그 種類에 따라 許容值를 달리한 것은 섭취量과 體內에서의 吸收率 등을 고려한 것이다. 原來부터 含有된 硒素의 量은 除外한다는 但書規定에 대하여는 뒤에 說明한다.

나. 硒素規格設定의 意義

Food은 根本의으로 衛生上 安全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環境因子의 영향으로 食品은 汚染을 받고 있으며,

그 汚染物質이 어느 水準(量)을 超過하면 衛生上 有害한 作用을 하게 된다. 옛날의 食生活은 대개 自給自足으로서 간단하고도 單純한 調理過程뿐이었기 때문에 衛生上의 問題點이 별로 없었으나 近來에는 食品工業이 急速히 發展하여 多種多樣한 加工食品이 우리를 食生活을 크게 向上시킨 것은 事實이나 工業的 大量生產과 廣範圍한 流通 및 長期貯藏에 따른 衛生上의 問題는 그치지 않고 있다.

污染因子들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우선 食品의 原料自體가 이미 汚染을 避할 수 없는 狀況에 놓여 있다. 토양을 비롯한 물과 空氣 등의 大自然에 汚染要因들이 散在해 있는가 하면 農藥의 使用으로 인하여 토양과 農產物이 汚染되고 있고, 온갖 產業폐기物과 폐수 등 公害物質로 인하여 河川, 海水가 汚染되므로써 水產物에 2次 汚染을 일으키며, 飼料添加物이나 動物治療藥品 및 放射能落塵으로 인한 農產物의 汚染도 막을 길이 없다.

原料 이후의 製造加工過程에 있어서도 器具의 不良이나 取扱의 非衛生으로 汚染을 이르킬 수 있고 添加物의 汚用, 남용이나 容器, 包裝의 材質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食品에 有害物質이 移行될 수 있으며, 貯藏, 流通過程에 있어서도 周邊 環境衛生의 不良과 取扱의 非衛生으로 汚染, 變質이 進行된다.

이러한 여러 汚染因子들을 크게 分類해 보면 微生物 및 微生物이 生產한 毒素 등의 生物學的 要因과 有害金屬, 農藥, PCB 등의 化學物質로 볼 수 있다. 이 중 有害金屬은 비교적 낮은 濃度에서 毒性을 나타내는 金屬元素로서 硒素(As), 카드뮴(Cd), 水銀(Hg), 납(Pb), 구리(Cu), 크롬(Cr), 안チ 몬(Sb), 셀레늄(Se), 주석(Sn), 亞鉛(Zn)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毒性으로 보아 硒素, 水銀, 납, 카드뮴이 代表的이다.

이러한 有害污染物質의 食品 중의 殘存量을 될 수 있도록 적게 하므로써 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자 하는 것이 食品衛生上 가장 重要하며,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規格基準을 制定하고 有害物質에 대한

限度를 設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有害物質의 許容量을 設定함에 있어 서는 그 物質自體의 毒性評價와 食品의 섭취량 등을 토대로 하여 綜合的으로 檢討해서 定한다. 이에는 動物實驗에 의한 許容濃度(Tolerance)의 決定이나 1日攝取許容量(Acceptable Daily Intake, A.D.I)의 算出이 必要하며 또 이를 위한 國民平均體重, 食品의 摄取量, 食品 中의 有害物質의 含量(殘存量) 등 廣範圍하고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야 한다.

다. 食品中의 硒素의 含量

硒素를 비롯하여 各種 有害物質의 食品中의 含量은 一定하지 않다. 그것은 같은 食品일지라도 環境條件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產地에 따라 다르고, 季節에 따라 變動되기도 하며, 環境污染의 如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食品일지라도 測定部位에 따라 다르고 測定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一定한 基準值란 있을 수 없으며, 文獻資料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文獻에 收錄된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硒素는 生體 中의 微量常在成分으로서, 亞硒酸(As_2O_3)으로서 生體 中에 약 $0.3\mu\text{g}/\text{g}$, 尿中에 $0.008\sim 0.15\mu\text{g}/\text{ml}$, 毛髮에 $0.3\sim 0.7\mu\text{g}/\text{g}$, 손톱에 $1.5\sim 4\mu\text{g}/\text{g}$ 含有되어 있다고 하며, 이는 주로 飲用水, 食品, 空氣 등으로부터 섭취되는 것이다. 食品 중에는 다시마, 海藻類에 $25\sim 40\mu\text{g}/\text{g}$, 오징어, 가지미(가자미科에 屬하는 바다물고기), 새우 등의 魚貝類에 $1.5\sim 17.5\mu\text{g}/\text{g}$, 牛肉, 豚肉, 犀고기 등에는 $0.01\sim 0.1\mu\text{g}/\text{g}$ 의 報告가 있다. 또 다른 文獻에 의하면 地穀中에 平均 1.8ppm , 土壤中에 $5\sim 10\text{ ppm}$, 河川에 1.7ppm , 一般食品에서는 0.5 ppm 程度이나 海產物에는 含量이 높은 것이 많아 오징어나 새우는 10ppm 을 넘는 것도 있고 다시마, 海藻(褐藻類에 屬하는 바닷말)에서는 50ppm 을 넘는例가 있다.

또 다른 文獻에 의하면 正常의인 人體中(全體)에서 $0.2\sim 0.3\text{ppm}$, 毛髮 中에서는 $0.2\sim 0.8\text{ppm}$, 손톱에서는 $0.087\sim 0.63\text{ppm}$ 등의

報告가 있다. 尿中의 硒素量은 0.004ppm 程度이나 그 變動이 매우 甚하다. 이와 같은 硒素化合物에 의한 食品의 汚染은 土壤과 河川 등의 自然環境에 의하기도 하지만 農藥의 殘留 또는 誤用, 食品加工에 있어서의 不良化學的合成品, 不良器具, 容器의 使用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라. 硒素의 毒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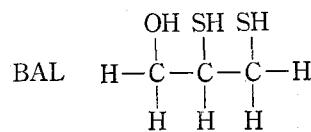
化學物質의 毒性은 그 化合物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 硒素에 있어서도 亞硒酸(As_2O_3), 無水亞硒素 또는 三酸化硒素라고도 함)이 代表的 化合物로서 毒性이 가장 强하다. 어른에 대한 中毒量은 5~50mg, 致死量은 100~300mg이다. 動物에 대한 經口投與致死量은 體重 1kg當 텁트 138mg, 블롯트 20~39mg, 토끼 15~30mg, 개 30~70mg, 犬 60~150mg이라고 報告되어 있다. 急性中毒은 汚染食品등 硒素를 比較的 大量 摄取했을 때 나타나며, 潛伏時間은 1時間 以內인 경우가 많다.

亞硒酸의 毒性은 細胞內 SH基와의 結合에 의하여 酵素系를 阻害하는 것으로서 硒酸이나 硒酸鹽은 亞硒酸 또는 亞硒酸鹽으로 還元되어 毒性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亞硒酸을 摄取했을 때의 急性症狀으로서는 콜레라症勢와 같은 嘔吐, 下痢를 수반하는 胃腸型과 血管, 呼吸中樞의 麻痺를 主微으로 하는 麻痺型이 있다. 亞急性 내지 慢性中毒에서는 보통 麻痺型이 천천히 일어난다. 즉, 血管神經의 障害에 의한 營養障害, 각 臟器(특히 肝臟)의 脂肪變性, 激痛을 수반하는 神經炎이 일어난다. 다시 慢性에서는 皮膚潰瘍, 黑皮症, 角化症, 손톱, 毛髮의 婆縮이 나타난다.

可溶性의 鹽類는 모든 粘膜으로부터 아주 쉽게 吸收되나 皮膚와 接觸한 경우에는 健康한 皮膚로부터도 그 微量이 吸收된다. 循環系中에 들어간 硒素는 急速히 血中으로부터 消失하여 주로 細胞蛋白의 硫黃部分과 結合한 形態로 臟器內에沈着한다. 肝, 腎, 脾 및 消化管粘膜 등에 많이 分布하나 一部는 神經組織이나 筋肉으로부터도 檢出된다. 摄取된지 2

週間後 무렵부터 毛髮이나 손톱에도 沈着하기 시작하고, 骨에도 移行된다. 그 排泄은 2~8時間後 무렵부터 시작되나 주로 腸管 및 尿路에 의한다. 이 排泄은 천천히 進行되어 1回投與에 있어서도 排泄이 完了할 때까지는 거의 10日을 要한다고 하며, 運用에 의하여 蓄積毒性을 나타낸다.

硒素中毒에 대한 解毒은 硒素中毒이 細胞內 SH基와의 結合에 의하여 그 細胞에서의 代謝를 阻害하는 것이므로 SH基를 가진 製劑의 投與에 의하여 解毒한다. 이 目的으로 BAL이 利用되어 왔다.



마. 硒素毒性에 대한 評價

硒素는 그 化合物의 形에 따라 毒性이나 其他의 性質이 많이 달라진다. 亞硒酸나트륨은 亞硒酸나트륨에 비하여 毒性이 1/3~1/4 정도로 弱하다. 이는 亞硒酸鹽이 體內에서 쉽게 SH基와 結合하는데 비하여 硒酸鹽은 體內에서 還元되어서부터 SH結合性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毒性의 發現은 溶解度와 吸收率에 따라 左右되는데 硒酸鹽은 消化管內에서의 溶解性이 적기 때문에 急性毒性도 낮다. 예컨대 As_2O_3 는 토끼에 대한 經口 LD₅₀이 15~30mg/kg이나 Pb₃(AsO₄)₂는 100mg이다.

食品中에서 檢出되는 硒素는 그것이 어떤 化學形인가에 따라 評價를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硒素의 含量이 많은 食品에 대하여는 原則의으로 化學形態別로 分析하여 그 毒性을 判斷해야 한다. 無機의 硒素化合物이 食品에 汚染되어 있을 때에는 中毒의 原因이 되기 쉽다(後述의 中毒例 參照). 그러나 이 中毒事件의 硒素含量보다 數倍나 많은 硒素의 量을 平素含有하고 있는 食品들은 있다. 위 “Food中の 硒素의 含量”에서 보듯이 海產物 특히 海草類에는 硒素의 含量이 높으나 여기에 含有된 硒素는 實際 아무런 害가 없다.

그理由는 이들 硒素가 그生物에 의하여自然的으로 섭취된 것으로서(汚染된 것이 아니고) 그生物에 必要한 化合物形으로 變化되어 無毒화되었다고 보는 見解와 海產物에 含有된 硒素은 거의가 有機形으로서 無機硒素와는 다른 代謝過程을 跟기 때문이라는 說, 혹은 代謝된 形態로 存在하기 때문이라는 說 등이 있다. 따라서 그 化學形에 대한 調查가 必要하다.

食品中의 硒素의 含量은 보통 1/10ppm 水準이하이나 魚類는 대개 3~50ppm 範圍를 含有하고 있는 것이 많고, 많은 硒素를 含有하고 있는 새우를 動物에 攝取시키면 그 硒素는 极히 良好하게 吸收되고 또한 迅速히 排泄된다고 한다. 海產物中의 硒素는 有機金屬의 形態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檢討結果에 의하면 魚類나 새우의 硒素는 거의가 油脂分에 있으며, Chromatography에 의하면 燃脂質에 類似한 움직임을 보이고 海草中의 硒素는 脂質系와는 달리 오히려 糖質에 類似하다고 한다.

이상, 文獻에 의한 바와 같이 硒素는 그 形態에 따라 毒性이 다르고 食品中의 含量도 많은 差異가 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느 水準이면 有害하다고 斷定하기 어렵다. FAO/WHO의 Codex Alimentarius Volume XVII(1984)의 Contaminants를 보면 硒素(As)의 Maximum acceptable daily load for humans가 0.002 mg/kg body-weight로 되어 있다.

바. 原來부터 含有된 硒素의 量은 除外

위의 「가. 硒素에 대한 規格」을 보면 硒素의 限度值에서 “原來부터 含有된 硒素의 量은 除外한다”라는 但書가 있다. 이 但書를 設定한 理由는 말할 것도 없이 食品中에는 原來부터 硒素의 含量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除外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許容限度를 超過하여 不適合이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특히 海產物에는 自然含量이 높다. 文獻에 나와 있는 資料 이외에도 國立保健院 食品分析科에서 1985年度에 沿岸에서 漁獲된 魚類中의 微量金屬分布에 관한 調査研

究를 한 바에 의하면 역시 硒素의 含量은 높다. 즉, 硒素는 전 檢體에서 檢出되었고 그 分布率은 1.0ppm 이하는 68.6%, 1.0~1.5 ppm 6.8%, 1.5~2.5 ppm 18.7%, 2.5~5.5 ppm 범위가 5.9%이다. 平均硒素含量도 갓장어가 2.85ppm, 가자미가 2.66ppm으로 높았으며, 그 표는 아래와 같다.

魚類名稱	硒素의 含量 (ppm)	
	範圍	平均
가자미	1.01~4.01	2.66
갈치	0.13~1.79	0.75
갯장어	1.75~5.45	2.85
고등어	0.26~1.68	0.83
꽁치	0.09~2.62	0.91
넙치	0.01~1.28	0.67
도루묵	0.21~0.71	0.54
도미	0.43~1.67	0.93
망둥어	0.18~1.43	0.74
멸명태	0.19~1.83	0.73
민어	0.21~1.63	0.69
병어	0.17~0.98	0.64
삼치	0.16~1.13	0.72
송어	0.23~1.82	1.07
양미리	0.11~1.72	0.71
우럭	0.63~0.91	0.77
전갱이	0.97~1.63	1.30
전어	0.64~1.21	0.93
정어리	0.29~0.73	0.51
조기	0.43~0.91	0.67
쥐치	0.18~1.68	0.81
	0.49~1.63	1.06

그런데, 原來부터 含有되어 있는 硒素의 量을 除外하는 것은 當然하나 問題는 이 原來부터 含有되어 있는 硒素의 量이 어느 程度인가 하는 것이다. 硒素뿐만 아니라 다른 金屬類를 비롯하여 有害汚染物質의 食品中의 分布는 一定하지 않다. 더우기 汚染物이 아닌 原來含有成分은 더욱 그 分布가 고르지 않다. 같은 食品일지라도 產地에 따라, 크기에 따라, 測定하는 部位(머리, 꼬리, 살部分, 表皮 등)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文獻資料에 나오는 原來含有成分의 量도 그 文獻資料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但書規定은 그運用에 어려운點이 있지만 實際許容規格 이상으로 含有된 食品들이 있으므로 이를除外시켜야 함은當然하며, 除外시키는方法은 文獻上의 資料나 實際測定值 등을 參考로 할 수 밖에 없다. 必要에 따라서는 수사로 그 때마다 测定하여 參考할 수도 있다. 그리고 加工食品인 경우 그原料가 海產物일 때에는 硒素의 含量關係를 신중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硒素의 含量이 높을 경우 이를 無條件 原來含有成分으로 斷定하지 말고 汚染의 可能性與否나 특히 加工食品일 때에는 製造工程, 機械·器具類의 良否, 使用 添加物의 適否 등 關聯事項들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사. 硒素에 대한 外國의 規格

현재 우리나라의 食品規格上 硒素는 이「제3. 食品一般에 대한 規格 및 基準」中의 「1. 硒素」에 總體的으로 規制하고, 食品個別의으로 規制한 것은 없다. 다만,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上에는 個別食品에 硒素의 規制가 있다. 그리고 食品 등의 規格基準中 食品이외의 容器·包裝 등에는 따로 硒素의 規制가 있다. 食品이나 其他에 대한 國內外의 一部 硒素規格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單位: ppm)

國名	食 品 別	硒 素 (As ₂ O ₃)	備 考
韓 國	器貝·容器·包裝 陶 磁 器 유 리 製 옹 기 類 센 로 판 종 이 · 加 工 紙 완 풍 품(장난감) 飲 用 水	0.05 0.05 0.05 0.1 0.1 0.01 0.05	
FAO/ WHO	糖類(Sugar, Dextrose, Lactose, Syrup等) (Powdered Sugar) Juice類 食用油脂(Lard, Edible Oils, Margarine)	1.0 2.0 0.2 0.1	

英 國 Canada	一 般 食 品 飲 新 鮮 한 채 소 海水魚·淡水魚製品 魚 類 蛋 白	1.0 0.1 1.0 3.0 3.5		
Australia	一 般 食 品 飲	1.5 0.15		
New Zealand	一 般 食 品 飲 체	1.0 0.2 1.0		
日 本	清 凉 飲 料 粉 末 清 凉 飲 料 밀 여 포 복 오 토 감 시 여 름 日 本 사 陶 유 장 洗	水 기 름 송 마 금 의 外 果 皮 배 파 磁 리 屬 缶 감 淨	不檢出 〃 1.0 1.0 1.0 1.0 1.0 1.0 3.5 3.5 3.5 3.5 陰 性 0.1 0.2 0.1 0.05	試驗方 法으로 規制 試驗方 法으로 規制

위의 資料 이외에도 世界各國의 規制가 있을 것이다. 最新의 正確한 規格基準을入手하기 어렵다. 위에서 陶磁器, 유리製, 옹기類 등은 모두 器具·容器·包裝들로서 이것에 대한 規制는 우리나라나 日本 모두 浸出溶液에 대한 許容限度이다. 日本의 規格中 清涼飲料水나 陶磁器에 不檢出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製品에 硒素를 전혀 許容치 않는 것이 아니고, 規定된 試驗方法에 따라 試驗할 때 檢出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實際에는 試驗方法의 檢出限度만큼은 許容하는 것과 같다.

4. 硒素中毒事例

硒素化合物에 의한 食中毒事例로는 1900年

英國에서 發生한 麥酒中毒이 있다. 原料中의 포도당에 硫素가 數百 ppm 含有되어 있어 麥酒中에 5~15ppm 殘存하여 6,000名 이상의 患者中에서 70名 이상이 死亡하였다. 日本에서는 1948年 아미노酸간장 製造時 中和用으로 使用하는 碳酸나트륨(Na_2CO_3)에 硫素가 混入되어 2,000名 이상의 中毒患者가 發生한 일이 있다. 이 경우는 碳酸나트륨을 넣어 둔 容器가 破損되어 다른 容器에 옮길 때에 가까이 있는 農藥의 硫酸石灰의 一部를 잘못하여 함께 넣음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典型的인 硫素中毒事件은 1955年 日本에서 일어난 森永粉乳 硫素中毒事件이다. 規模에 있어서나 中毒對象者가 乳兒 한 點 등 世界의 食中毒史上 未曾有의 大事件이었다. 그概要를 보면 1955年 여름, 日本의 岡山縣을 中心으로 한 西日本一帶에서 乳兒에 發熱을 수반하는 運動低下와 食飲不振, 睡眠不良, 嘔吐, 下痢, 재채기, 流淚 등의 카타르症狀, 神經炎, 黑皮症(皮膚에 검은 色素가沈着하는 것으로서 硫素中毒의 典型的 症狀임), 角化症, 貧血, 腹部膨滿 등의 症狀을 나타내는 集團中毒現象이 나타났다. 原因을 調査한 結果, 森永乳業의 德島工場에서 製造한 調製粉乳가 原因食品으로 밝혀졌고, 이 調製粉乳에 많은 量의 硫素가 含有되어 있음을 알 아냈다.

그原因을 追跡한 結果, 調製粉乳에 乳蛋白質 安定劑로 第2磷酸나트륨을 넣는데 위 調製粉乳에 넣은 것은 純度가 좋은 第2磷酸나트륨이 아니라 실은 硫素를 많이 含有한 第3磷酸나트륨과 硫酸나트륨의 混合物임이 밝혀졌고 이 混合物에는 硫素가 亞硫酸으로서 5~8%(3.77~9.17%라는 資料도 있음)나 含有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調製粉乳에도 21~35ppm의 硫素가 含有되어진 것이다. 食品에 넣는 添加物은 當然히 純度가 높은 좋은 製品을 써야 하는데 森永工場側은 그 品質을 確認하지 않고 添加해버린 것이다.

中毒患者는 이 粉乳를 계속 먹은 生後 4~12個月의 乳兒였으며, 1日 100g의 粉乳를 섭

취한다고 할 때에 매일 2~3mg의 亞硫酸을 섭취한 것이 된다. 이는 乳兒에 있어서는 亞急性 내지 慢性中毒을 일으키기에는 充分한 量이었다. 中毒死한 어린애 4名의 體內 硫素의 含量은 肝에 0.5~2.4ppm, 腎에 0~0.28 ppm, 小腦 0~0.2ppm이었으며, 치료中의 어린애 10名의 毛髮에서는 16.2~62.3ppm, 또 2名의 손톱에서는 각각 52.4 및 71.2ppm의 硫素가 檢出되었다.

어린이들의 中毒原因이 唯一한 營養源인 粉乳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계속 粉乳를 먹이면서 간호에 精誠을 다한 어머니들의 努力이 오히려 事故를 擴大시키고만 悲慘한 事故였다. 결국 이 事故로 다음 해인 1956年 2月現在 中毒患者 총 12,159名中 131名이 死亡한 世界最大의 事故가 되고 말았다.

中毒事件發生의翌年인 1956年 日本厚生省에서는 精密檢診結果 後遺症으로 認定될 만한 것은 없다고 發表하였고 그 뒤 10餘年이 經過하였으나, 1969年 學界에서當時 살아남은 中毒兒들에 대한 追跡調查結果를 發表하여 醫學的 및 社會的으로 큰 問題가 되었다.

1969年 이후 많은 調査報告가 있었는데 그內容을 보면 完全히 健康하다는 사람이 9%에 不過하였고(對照群에서는 39%), 手足의 運動障礙가 있다, 피로하기 쉽다, 顏色이 나쁘다, 頭痛이 자주 있다, 感氣가 걸리기 쉽다, 靈魂해 지거나 넘어지는 發作이 있다 등 여러 症狀을 나타내며, 被災兒의 平均身長은 같은 年齡의 다른 어린이들에 비하여 작고, 腦波의異常所見의 出現率이 一般에 비하여 높으며, 中樞補經系의 症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 難聽의 出現率이 높으며, 皮膚의 異狀이 많은 등 여러가지 影響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中毒事件은 食品添加物 그 自體가 아무리 安全하다고 해도 그 중에 含有되는 不純物에 따라서 또는 잘못하여 전혀 다른 物質이 添加되면 重大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큰 教訓을 주었으며, 添加物 製造業者가 純度가 높은 좋은 製品을 만들어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食品製造者는 그 製造過程에 있어서

使用하는 各種 添加物에 대하여 最大限의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事件이었다. 日本政府는 이 事件의契機가 되어 食品添加物의 純度를 確保하기 위한必要性을 感悟하고 각 添加物에 대한 純度規格를 정하는 作業을開始해서 1960年에 食品添加物의 規格基準을 完成하였다.

자. 础素規格에 對한 改善方案

위에서 國内外의 础素에 대한 規格을 比較하였는 바, 그 特徵을 보면 우리나라의 食品個別으로 規制하지 아니하고 이를 固體食品液體食品 및 調味料로 大分類하여 規制하고 있고, 國際規格인 FAO/WHO合同食品規格委員會에선 각 食品個別으로 規制하고 있다. 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日本은 食品別로 規制하고 기타는 양쪽을 混合한 形態로 하여 個別食品이 있는가 하면 一般食品 등으로 크게 分類하여 規制하고 있다.

이를 比較 檢討해보면 각각 長短點이 있다. 우선 國際規格이나 日本規格처럼 각 食品別로 規制하는 것은 食品別로 뚜렷이 알 수 있고 不必要한 品目에 대하여는 設定하지 않는 등 가장 原則의이고 바람직한 制度이나 食品의 種類가 많으므로 複雜해 질 수도 있고, 또한 個別础素規格의 許容限度가 同一한 경우도 많 은데 이를 일일이 規制를 해야 한다는 不便한 점도 있다.

反面에 우리나라처럼 너무 크게 分類하여 規制하는 것은 簡單明瞭한 長點은 있으나 食品別特性이 無視되고 너무 劃一의이며, 础素의 規格을 設定할 必要가 없는 食品까지 모두 適用되도록 短點도 많다. 이런 長短點을 서로 補完하고 合理的으로 規制할려면 原則의으로 础素의 規格을 設定할 必要가 있는 食品만을 選定하여 그 食品別로 特性을 檢討해서 個別으로 規制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础素의 規制를 좀 더 擴大하여 되도록 많은 食品에 础素의 規格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個別 및 中分類의 混合形이 適合하다고 認定된다. 즉, 個別으로 特性이 強한 食品에 대하

여는 그 食品別로 規制하고, 그의 서로 비슷한 食品들은 모아서 適當한 形態로 分類하여 (例컨대, 飲料類, 食用油脂類等) 規制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너무 大分類하여 規制하는 것은 合理的이지 못하다. 食品別特性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너무 劃一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現在와 같은 础素規格이 制定된 것은 1969年 10月 29日 保健社會部令 第336號로 「Food의 規格 및 基準」이 改正되면서 그 내용을大幅補強하던 때였다. 이 때에 처음으로 础素, 호흡알데힐, 抗生物質 등과 같은 共通一般規格이 制定되었고, 個別食品 43品目에 대한 規格基準을 新設하였다(從前까지 8個品目이 制定되어 있었으며, 이 때 9. 라면 ~51. 통조림食品을 新設하였음). 그후 오늘 날까지 施行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础素規格도 改正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前述한 바와 같이 可能한 즉 個別食品別로 規制하고 共通으로 適用시킬 수 있는 것은 食品種類別로 細分類 또는 中分類로 分類하여 規制해야 할 것이다. 비단 础素뿐만 아니라 規格基準全般에 걸쳐 全面的인 再檢討를 해서 우리나라 實情에 맞고 國際化趨勢에 對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改正作業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規格基準의 制定 및 改正作業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業務量의 過多와 人力不足이란 根本的인 問題도 있지만 規格基準을 檢討할려면 우리나라 食品全般에 대한 實態를 把握하고 必要에 따라 이를 分析하여 資料를 確保해야 하며, 諸外國의 規格基準을 參考하고, 規格基準設定에 따른 衛生上의 安全性確保와 食品工業의 發展, 食品輸出入에 미치는 影響等 檢討, 調査, 研究해야 할 事項은 매우 많기 때문에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施行을 通하여 褊은 經驗과 檢討를 이룩해 왔으므로 이를 參考로 하여 꾸준히 作業을 進行해 나가면 成功的으로 改善될 것이다 생각된다. <다음호에 계속>

参考文献

1. 保健社會部告示 第7號(1977. 2. 14) 食品 等의規格 및 基準
2.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Alimentarius Vol. XVII Contaminants (1984)
3. FAO: Compilation of legal limits for Hazardous substances in Fish and Fishery Products(1983)
4. Conor Reilly: Metal Contamination of Food (1980)
5. 白德禹外: 魚類中의 微量金屬分布에 관한 調査研究. 國立保健院報(1985)
6. 邊野喜正夫外: 食品衛生學. 朝倉書店(1984)
7. 日本藥學會編: 衛生試驗法. 注解(1983)
8. 日本食品衛生協會發行: 食品と毒性(1971)
9. 堀口 博: 公害と毒・危険物. 三共出版(株)
10. 票飯原景昭・内山充編: 食品の安全性評價 (1983)
11. 渡邊忠雄外: 食品の汚染と安全性, 講談社 (1980)

해외식품전시회 안내

12회 국제식품박람회

- 주최자 : SIAL
- 장 소 : 프랑스 파리
- 기 간 : 1986년 10월 20일~24일
- 국내연락처 : 프랑스 대사관
C.P.O Box 1249
전화 : 734-9032
텔레스 : COMATTA K27528
- 출품내용 : 육가공, 주류, 통조림류, 과자류등
식품전반

○전시회 성격

유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서 대규모전시장에 70여개국에서 출품한 4000여제품이 전시된다. SIAL은 정기적으로 120개국의 사업가 및 식품제조업자들이 식품시장정보, 자원정보, 제품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한 모임으로 올해의 전시회에서는 전시회가 끝나는 직후 새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87 국제식품 및 농산물박람회(NASDA)

- 주최자 : 미국 각주 농무성연합회
미국농무성 해외농업처
- 장 소 : 미국 시애틀시 시애틀센터
- 기 간 : 1987년 4월 29~30일, 5월 1일
- 국내연락처 : 미국대사관 및 농업무역관
전화 : 778-9115(농업무역관)
텔레스 : K25823 SOLATO
- 출품내용 : 농업 및 원예산물의 식료품, 주류, 잡화, 씨앗등

○전시회 성격

미국 최대의 농산물 및 식품전시회로 미국의 수출용식품, 식료잡화, 종묘등을 보여주기 위한 정기행사이다. '87년행사에는 어느 행사때보다 광범위한 미국의 수출업자가 출품할 것이며 80여개국에서 방문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 이후 5월 3일~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식품마케팅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박람회는 본협회에서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임(전화 585-5052, 3)〉